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83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 : 임이자 · 김위상 · 이헌승

이상휘 · 김형동 · 김성원

유용원 · 최수진 · 우재준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 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유형인 휴업과 휴직은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법률의 규정상 구분되어 있어 하위 법령에서 유형별 지원요건, 지원절차 등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고, 노동법상 휴업이나 휴직과는 다른 개념임에도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 어. 법 규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이러한 현행 규정에 따른 제도는 긴박한 경영난으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 신청을 지연시키고, 휴업과 휴직의 요건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불편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현행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으로 '휴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시 및 지원조건 등을 보다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정하여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 자에 대해 적기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을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휴무 조치"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하여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 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게 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			
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			
게 된 사업주가 <u>근로자에 대한</u>	<u>근로자에</u>		
<u>휴업, 휴직</u> , 직업전환에 필요한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	제공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휴		
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u>무 조치</u>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			
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			
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	,		
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u>「고용</u>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 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 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u><</u>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정책_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원을 확대하여 할 수 있다.

- 1.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 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 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
- 2.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 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 하게 된 경우